

## 醫療保險誌上講座

齒協保險委員會 提供

- ◇ ……醫療保險은 이제 전 開業會員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實體의 制度로 자…… ◇
- ◇ ……리를 굳혔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胎生되고促進…… ◇
- ◇ ……되고 적용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마찰은 필수적인 것. 이 마찰의…… ◇
- ◇ ……순환을 얼마만큼의 최대공약수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적용의 가장 科…… ◇
- ◇ ……學的인 방법일 것이다. …… ◇
- ◇ ……齒協의 전 개업회원들에게 새로운 制度의 적용에 대한 最小限의 이해를 둘…… ◇
- ◇ ……고자 醫療保險에 대한 의문점들을 問答式으로 엮어본다. 〈編輯者註〉…… ◇

【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요 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된 후 용양취급기관 진료비 개산급등록지침에 의하여 연대보증서(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 1통과 인감등록 및 수령인증 조서 2통을 의료보험 관리공단 지부에 제출한 일 이 있다.

그후 청구명세서를 가지고 거래은행에 청구를 하였더니 理解不能인 자유로 청구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원인이 무엇인가?

【답】 위탁금융기관은 재정보증을 떨한 요양취급기관이 請求한 보험급여비용(진료비)을 일단 지불할 의무가 있다.

진료비 지급방법은 ①공단직불제와 ②위탁금융기관 직불제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양기관에 서 위탁금융기관 직불제를 선택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도 개산급 지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금융기관측의 업무량과다 등으로 인한 업무해방이나 관리공단측의 과실이나 착오가 원인으로 사료된다. <별표① 참조>

앞에서 언급된 공단(지부)직불제는 계좌송금불과 지급증서불의 2종이 있는데 공단(지부)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취급기관은 “진료비 청구서”에 “보기 I”와 같은 내용을 “보기 II”와 같은 부분에 기재 또는 고무날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별표② 참조>

【문】 관리공단 지부 인근에서支部를 상대로 진료비請求를 하여 오다가 의원을 이전했다. 인근 위탁금융기관에 청구코자 한다. 方法은?

【문】 의료보험 관리공단은 진료비청구방법의 변경 중 종전 위탁금융기관 직불에서 공단지부 직불의 변경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종전의 공단지부거래에서 위탁금융기관으로 方法을 바꾸는 것은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公團스스로의 운영의 합리화(?)로 인해 용양취급기관이 받는 피해의 하나로 추측되며 시급한 개선을 요한다 하겠다.

【문】 치아우식증의 분류방법은?

【답】 제 1도 치아우식증은 볍탕질, 제 2도는 상아질, 제 3도는 치수까지 침범한 것을 말하며 제 4도는 치근단 병소까지 진행한 것을 말한다.

### <별표 ①>

#### 용양취급기관 진료비 개산급 등록지침

제 1조(목적)이 지침은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급여비용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 2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양취급기관이 취급점포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개산급 등록 신청절차를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개산급 등록신청) 요양취급기관의 장은 취급점포(조흥은행, 농협, 한국주택은행 각 모지점 : 編者註)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개산급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 1호 서식(연대보증서 : 編者註)에 의한 본인의 인감등록 및 수령인 지정조서를 공단에 2부 제출하여 개산급 등록절차를 끝하여야 한다.

제 3 조(재정보증) ①요양취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 2호 서식(인감등록 및 수령인 지정조서 : 編者註)에 의한 연대보증서에 2개기관 이상의 요양취급기관장의 연대보증 또는 당해 단체장과 당해 기관이 속해 있는 시·도 지회(지부)장의 연대보증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재정보증을 이행하기 어려운 용양취급기관의 장은 별도 재정보증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에 가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단이 이를 인정한 것에 한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연대보증절차) ①요양취급기관의 장이 제 3조 제 1, 제 2항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하는 요양취급기관의 장의 인감증명서(시·도지부(회)장의 경우에는 지부(회)장)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요양취급기관의 장은 제 1항에 의하여 보증하는 요양취급기관이 폐업해 있거나 요양취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신임지부(회)장 명의의 보증인 생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진료비 개산급 지급중지) 공단이 사장은 요양취급기관이 제 3조에 의한 재정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규정 제 25조에 의한 개산급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②>

\* 진료수가 청구시 계좌송금방식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에는 “진료비청구서”에 “보기 I”와 같은 내용을 “보기 II”的 부분에 기재 또는 고무날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보기 I]

계 좌 송 금 의 뢰	거래은행점포명	지점
	예금 종류	
	구좌번호	
	예금주	

#### [보기 II]

##### 진료수가 청구서

⑧ 공무원 및 .....

..... 청구 합니다.

#### [보기 I]

##### ⑨ 첨부

51

19

\* 기재요령 ○예금종류 ; 예금의 종별을 기재

(예시 ; 보통, 저축, 정기...)

○구좌번호 ; 예금통장계좌번호

## 訂 正

本 協會誌 79년 7월호(통권 제 17권 제 7호) 醫療保險 誌上講座 內  
容中 p. 505 上端 10項의 ⑤Inlay時 아말감充填料를 산정치 말것은  
⑥Inlay時 아말감 材料代를 산정치 말것의 誤植이 옳기 바로잡습니다.

= 齒協保險委員會 =